

건설클레임 사례분석을 통한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Suggestion of Construction Contract Practice in the Public Project through the analysis of Construction Claims

조 영 준* · 현 창 택**

Cho, Young-Jun · Hyun, Chang-Taek

요 약

최근들어 설계서의 누락, 오류 및 불분명과 관련된 클레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건설분쟁해결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공자들은 발주자가 제시하는 클레임조정결과의 내용이 건설현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의 책임 및 건설 클레임을 분석한 후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 결과 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반복공사에서는 표준도 축적 및 재활용되어야 하고 발주자별로 특화된 시방서가 활용되어야 한다.
- (2) 설계자의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책임보험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 (3) 도면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 (4) 설계업무대가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 (5) 다양한 계약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키워드 : 건설계약, 건설클레임, 계약당사자, 설계서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¹⁾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주참여자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이다. 즉 이들 참여자들의 역할에 따라 건설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건설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는 발주자이지만 발주자는 사업의 주인이므로 계약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과는 역할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계약에 의해 참여하는 자들은 전문가로서 도급계약¹⁾ 내지는 위임계약²⁾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이중에서 설계자는 사업의 초기에 참여하게 되므로 사업의 성공여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설계자는 계약체결후 설계서를 작성하며 이들 설계서는 입찰공고부터는 입찰문서³⁾로서, 그리고 현장설명을 거치고 낙찰되어 계

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계약문서⁴⁾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설계서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책임은 설계와 시공의 분리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대한 중요성은 인정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설계서와 관련된 문제가 설계과정에 드러나는 경우보다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수정하기 위해 기간과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설계자의 성과물인 도면과 시방서의 누락·오류등과 관련하여 건설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문제점의 책임소재를 가리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3)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입찰에 관한 서류는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4)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이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1) 시공자와 설계자(설계업무담당)는 도급계약의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2) 감리자의 경우 위임계약의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참고로 신문등에 공표된 클레임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98. 2월 6개 건설업체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클레임 항목 중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와 관련된 사항이 있고, 특히 여기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은 계약당사자간의 역할, 책임 및 권한이었다.

2000년 상반기중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수행중이던 5개 건설업체는 공항공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클레임 항목중 쟁점사항은 설계시공분리입찰계약에서 계약당사자의 책임, 계약당사의 유효성 등에 관한 것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클레임 발생을 최소화하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자의 성과물인 설계서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책임한계를 고찰한 후 클레임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실제 현업에서 공사과정중 클레임으로 제기되었거나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을 대상으로 클레임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에 대한 기본 고찰을 하면서 설계자, 설계서 및 설계변경의 개념을 살펴본 후, 설계서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고찰하였다.

둘째, 국가계약법령이 적용되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클레임사례를 조사하여 설계서와 관련된 클레임의 종류, 클레임에 대한 설계자의 책임 및 클레임 요인을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된 클레임내용을 바탕으로 설계서 관련 건설클레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도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 설계서에 대한 기본고찰

2.1 설계자 정의 및 업무

「건설기술관리법」⁵⁾에서는 설계자를 설계 등 용역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육성진흥법」⁶⁾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

5)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 2(설계 등 용역업자의 의무) 설계 등 용역업자(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중 설계 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와 그 설계 등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정의)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기업내의 전담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기술사법」⁷⁾에 의한 기술사 중 설계 등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사법」⁸⁾에서는 설계자를 건축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이하 건교부라 한다)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설계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중 설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 건교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건축사로 볼 수 있다.

2.2 설계서 및 설계변경의 의미

현행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설계서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로 구성⁹⁾되며, 수의계약공사,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이하 ‘일괄입찰공사’라 한다), 대안입찰공사에서 대안으로 채택된 공사의 경우를 제외한 공사추정가격이 1억 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설계자가 기술용역을 완성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검사중 계약이행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필요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통상의 발주자는 설계자보다 훨씬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설계자를 간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공사과정중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 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및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로 나누어지며¹⁰⁾, 각 경우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7) 「기술사법」 제3조 (기술사의 직무) ①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한다.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 등록등) ① 개업하기 위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하는 기술사는 과학기술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8) 「건축사법」 제2조 (정의) 1.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라 함은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도면 구조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우리나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항, 1999.

10) Ibid 제19조(설계변경).

이로 미루어 볼 때 설계시공분리입찰계약공사(이하 '분리입찰공사'라 한다)에서 설계서에 대한 책임을 발주자가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설계서는 입찰당시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며, 설계서의 문제는 발주자와 설계자의 문제이지 시공자와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2.3 설계서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책임

(1) 분리입찰공사

분리입찰공사에서는 설계자와 시공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바, 각각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계약과 관련된 계약당사자의 책임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된다.

설계자의 업무는 설계서 작성이지만, 설계서 작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설계자가 설계도면을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발주자별로 상당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분리입찰공사에서 설계자의 전문성을 초과하는 발주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될 것이며¹¹⁾ 이 때문에 설계서의 누락, 오류, 불분명 및 설계서가 현장 여건과 다르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설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¹²⁾, 설계자가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해외의 판례는 많으며 몇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Irv Richter, 『Handbook of Construction Law and Claims』, Reston Publishing Company, 56쪽~57쪽, 1982.

미국 Paxton 대 County of Alameda, p259 (Cal. 1953) "엔지니어의 기술제공사항에 대한 기준" : 고객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함에 있어서, 보통 훌륭한 조건을 갖춘 설계자들에 의해 주어지는 학습 및 기술의 정도와 동일한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설계자들과 동일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설계자가 그의 기술을 제공하면서 동일한 지역에서 전문적인 영업을 하는 명성이 있는 요원이 제공하는 기술과 같은 수준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그의 또 다른 의무이며 그가 고용되어진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지는 노력에 대하여 그가 학습한 사항을 적용하고 기술을 제공하는 데 그가 최선의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도 그의 의무이다.

미국 Allied Properties 대 John A. Blume등, 102 Cal. Rptr. 251, 1972 : 전문가에 의한 서비스는 그들의 전문적인 기술에 기인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문가 구성원들과 정상적인

기술과 경쟁을 행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전문가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설계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과실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서는 안되고, 단지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경쟁과 기술을 기대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서비스를 구매한 것이지 보증을 구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David L. Cornes, 『Design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46쪽~51쪽, 1994.

영국 Harmer 대 Cornelius(1868) :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약속된 필수적인 기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위반이다

영국 Blyth 대 Birmingham Water Works Co.(1856) : 과실은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man)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행하게 하는 대가를 받고 정상적인 사람이 해야 하는 어떤 것을 빠뜨린 것이다.

영국 Sutcliff 대 Clippendale등(1971) : 발주자가 주택건설과 관련하여 건축가를 고용할 때 그는 건축가가 그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도내에서 그의 의무를 이행할 것과 건축가가 작업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완수할 것을 확신하는 능력내에서 합리적으로 작업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도 되고, 계약에 의해 약정된 결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한다. 특히 건물주는 건축가가 계약을 관리하고 작업을 감독하여 가능한한 작업의 품질이 기대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확신해도 된다.

(2) 일괄입찰공사

일괄입찰공사란 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계약의 일종이다¹³⁾. 즉 수급인은 설계와 시공이외의 어떠한 사항에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계자로서의 수급인의 책임은 설계를 완성하는데 있고, 시공자로서의 수급인의 책임은 공사를 완성하는데 있다.

따라서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 수급인의 책임은 설계책임과 시공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그림 1 참조),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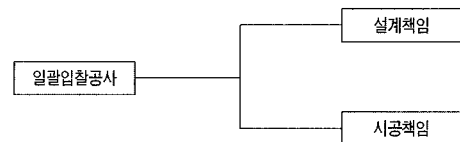


그림 1. 일괄입찰공사의 계약당사자 책임

설계책임이란 설계도서작성 책임을 의미하고, 경험있는 설계자 일지라도 당해 설계자가 판단한 것과 같이 판단하여 설계할 수밖

11) 왜냐하면 발주자가 설계자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발주자가 직접 설계를 하든가 아니면 설계자와 고용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12)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제3항

13)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제3항

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설계자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이 설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전문책임의 한계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책임보험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¹⁴⁾. 설계자가 설계서작성과정에서 누락, 오류 등의 미비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설계서를 작성하였다면 설계서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때 설계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설계서가 완성된 것으로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설계서의 검토 및 승인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그 이후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대해 발주자의 책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계약체결 전에 미리 설계도서를 추가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시공책임이란 경험있는 시공자가 계약에 따라 당해 시공자가 시공한 것과 같이 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상을 초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시공자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것 또한 시공자가 부담할 수 있는 전문책임의 한계이며, 이를 위해 공사보험이 도입¹⁵⁾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계와 시공을 동일회사가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도급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고, 공동도급은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구분¹⁶⁾된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토목공사등과 같이 공구분할이 가능한 경우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¹⁷⁾. 공동도급중 분담이행방식으로 할 것을 입찰안내서에 명기하였을 경우 발주자는 공동수급자의 연대책임을 묻지 않고 개별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설계자와 시공자가 공동도급으로 입찰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공사에 적용하면 설계상의 책임은 설계자가 부담하고, 시공상의 책임은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1994년에는 분담이행방식이라 하더라도 지체상금대상은 전체공사에 대하여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¹⁸⁾, 1998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지체를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

고 있다¹⁹⁾. 재정경제부질의회신에서도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해당 공종을 지체한 구성원이 그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²⁰⁾.

1998년도의 판례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에 의할 경우 일괄입찰공사의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 설계자와 시공자가 공동수급자가 되었다면, 설계자의 책임대상금액은 설계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이 되며 처리방법은 설계자가 발주자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상의 문제로 인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이를 다시 설계자에게 요청해야 함을 의미한다(그림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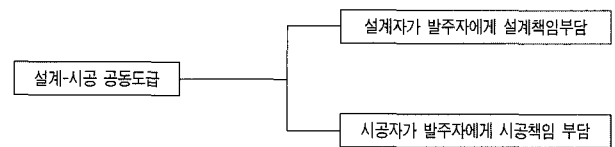


그림 2.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책임

일괄입찰공사에서는 계약의 이행중 지하조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반조사책임을 시공자에게 전가하려는 경우가 많다. 시공자에게 지반조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계약특수조건을 통해 부담시키는 것이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있다²¹⁾.

14) 조영준, 「설계에 기인한 위험으로부터 계약당사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 책임보험 도입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10호, 315쪽, 1996.
 15) 국가불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3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참조.
 16)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별표1 공동수급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회계예규 2200.04-136-5, '97.10.1.
 17) 장훈기, 「정부계약제도」, 법신사, 1188쪽, 1996. : “분담이행방식은 각 구성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을 분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구성원간 능력의 보완과 책임의 공유를 통한 이른 바 결합과실을 추구하는 공동도급제도의 본질을 일탈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토목공사와 같이 공구의 분할이 용이할 경우에는 보다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다”

18) 대법원판례 (1994.3.25. 제3부 판결 93다42887 공사대금) : “갑(甲)과 을(乙)이 함께 지하차도 확장공사를 국가로부터 도급받아 갑(甲)은 포장을 제외한 전체공사를, 을(乙)은 포장공사를 각 나누어 맡기로 한 경우 공사 중 갑(甲) 및 을(乙)이 각 책임지기로 한 부분이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공사이행에 관하여 상호연대보증(相互連帶保證)을 하였으며 도급인(都給人)인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갑(甲) 및 을(乙)이 맡은 위 각 공사는 전체로서 지하차도 확장공사라는 하나의 시설공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한 위 공사의 성질상 을(乙)이 맡은 포장공사는 갑(甲)이 맡은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후에 할 수 있는 공사이어서, 갑(甲)이 자신이 맡은 포장공사를 준공기한내에 하지 못하는 것이며,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공시한도 갑(甲)이 자신이 맡은 공사를 위 준공기한 내에 하지 못함으로써 지체상금(遲滯償金)을 부담하는 경우 그 지체상금(遲滯償金)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갑(甲)이 맡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공사의 전체 공사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19) 대법원판례(1998.10. 2. 98다33888 판결 공사대금) :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20) 장훈기, 「정부계약제도해설」, 1250쪽, 1997. 유권해석 (회계41301-740, '97.3.27) 참조.
 21) Robert F. Cushman, 「Differing Site Condition Claims」, John Wiley & Sons Inc, 8쪽~ 9쪽, 1992.
 1. 지반조사기간이 충분해야 함.
 2. 지반조사결과를 입찰가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3. 지반조사결과가 반영된 입찰가가 낙찰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함.

한편 미국건축사협회(AIA)²²⁾, 미국종합건설협회(AGC)²³⁾, 국제엔지니어연합회(FIDIC)²⁴⁾ 등에서 지하조건의 경우 매우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계약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파급효과가 훨씬 복잡하므로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계약상대방인 시공자에게는 발주자가 조사한 자료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발주자의 조사사항이 현장과 다를 경우 변경명령(Change Order)에 의거 계약금액은 적의 조정된다.

3. 클레임 자료분석

3.1 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 활용한 클레임 자료는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公社 등을 대상으로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제기된 클레임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계약의 형태를 보면 일괄입찰공사 6개현장, 수의계약공사 1개현장, 분리입찰공사 16개현장 등으로 나누어진다. 공사형태별로는 지하철공사, 공항공사, 도로공사, 건축공사 등 다양하며, 최근까지 시행되었거나 현재도 시행중인 대형국책사업에서 다수의 클레임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제공자가 구체적인 발주자나 시공자의 명칭, 공사명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이를 밝히지 않는다.

3.2 설계서 관련 클레임사례

(1) 완성부분품질 관점상의로 인한 클레임

시공자가 시방서와 도면 및 현장감독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시공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본·지사 및 외부기관 검사자가 뚜렷한 방안이나 공법을 제시하지 않고 보완이나,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1998년 설계시공분리계약공사현장에서 검사자의 품질확인 기준이 모호하여 보완시공, 재시공 등을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시공자는 분리입찰공사에서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금액은 1개공구 5,800만원이었다.

22) AIA, 『A191』, 제8.2조 Concealed Condition, 1985. : 정상적이지 않거나 재료의 성질이 다른 사항일 경우 계약금액은 변경명령(Change Order)에 의해 적의 조정되어야 한다.

23) AGC 410, 제9.15조, 1982. : “지하공사 미지조건이 도면, 시방서 또는 발주자가 제시한 자료상에 명시된 조건과 다른 경우 변경명령(Change Order)에 의해 계약금액 및 일정은 적의 조정되어야 한다.”

24) FIDIC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조건 제4.11조 예측할 수 없는 지표면 아래조건, : 경험있는 시공자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일 경우 준공기간 연장되어야 하고 계약금액은 추가되어야 한다. 특수조건(위험을 분담할 경우) 추가경비 00%를 계약금액에 추가한다. (추가경비의 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제4.9조 현장자료 :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제반자료에 대한 해석책임이 있다. 1995.

이는 현장감독원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시공되었다면 현장감독원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서 시공자가 달성해야할 품질수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형적인 “Contra Proferentum(작성자 책임주의 원칙 내지는 해석자 우선의 원칙)”²⁵⁾ 사항으로 볼 수 있다.

(2) 구체적 표현없는 공법으로 인한 클레임

계약서 및 시방서에는 일반적인 사항만을 기술하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가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자체적으로 공법을 선정하고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발주자가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0년 공사도중 분리입찰계약에서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사항으로 보아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총합계 금액은 5개공구 22개항목 116억원이었다.

일반적으로 공사에 관련된 모든 공법이나 기술사항을 시방서에 기술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 또는 지시를 구한 후 수행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공사비는 일반적으로 시공자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므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했다고 하여 시공자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법선정에 대하여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기본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클레임

일괄입찰공사로 계약체결되었지만 공사과정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대폭적인 설계변경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에는 전체적으로 설계업무를 다시 수행해야 하지만, 설계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다. 이에 발주자는 산출된 설계비에 일정비율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시공자는 1998년 일괄입찰공사를 수행하던 중 설계비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하여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금액은 1개공구 24억원이었다.

기본계획의 변경이 발생하는 대폭적인 설계변경사항이 새로운 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나, 통상적으로 기존계약의 변경으로 보고 처리하고 있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1조에서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이상 감소되었을 경우와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를 초과할 경우 시공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현행 기술

25) 애매한 사항을 유발한 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업무,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처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에는 각 업무별로 적용해야 하는 단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산출내역서 누락공종의 설계변경클레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으나 기존계약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특정공종을 추가로 수행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에 일부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대개의 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설계서의 누락사항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설계변경당시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를 적용하거나 산출내역서상의 특정공종에 누락된 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리입찰공사에서는 1998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빠짐없이 등장하는 클레임이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입찰당시 설계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일위대거나 단가산출서의 공개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5) 공법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클레임

계약문서의 일부인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설계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설계하였을 경우 단순히 설계자의 일반적인 책임으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경우 시공자는 가장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법으로 처리하고자 할 것이고, 발주자의 경우 가장 안전한 공법으로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저렴한 공법과 안전한 공법사이에는 비용차이가 큰 경우가 많다. 결국 계약당사자 쌍방간에 발생한 견해차이가 어느 한쪽 의견으로 취합된다면 다른 쪽 당사자는 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는 실정이다. 따라서 발주자는 가시설등 공사에서 안전한 방법으로 보강하도록 지시하였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 시공한 후 1998년 일괄입찰공사에서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금액은 6개공구 12개항목 322억원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행공법에 대한 쌍방당사자 입증의 유효성에 의해 책임문제가 분담되어야 할 것이다.

(6)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클레임

우리나라에서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대상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를 말한다²⁶⁾.

특히 이와 관련하여 실정계약조건의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불가항력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어느 정도가 홍수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둘째,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책임이 교차할 경우 책임분담방법이 없다.

셋째,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기타 사유로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현재 국내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계약당사자간에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상의 처리방법 등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리결과에 대해 대부분이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1995년, 1998년 대홍수가 발생하였을 때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시공자가 일괄입찰공사에서 1998년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금액은 4개공구 5억3천만원이었다. 이후 1998년도 홍수에 대해서는 8억원에 대하여 추가클레임을 제기하였다.

(7) 감리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클레임

감리자도 건설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감리자와 시공자는 직접 계약관계를 형성(Contract Privy)하지는 않지만 현행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감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시공자의 업무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과도한 지시사항이나 입증되지 않는 근거로 인한 지시사항, 불요불급한 대기시간 등은 실제로 시공자의 공사금액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에 기인한 책임문제의 부담 주체에 대하여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감리자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1998년 7월부터 손해배상보증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감리자의 지시로 작업위치를 변경함으로 인해 추가비용이 소요되었고 이에 시공자가 1998년 수의계약공사, 2000년 분리입찰공사에서 각각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금액은 1개공구 1개항목 5억7,000만원, 5개공구 1개항목 12억원이었다.

(8) 공기단축이나 공기연장에 따른 클레임

현행계약조건하에서 발주자는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자신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시한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발주자의 용지보상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데 방해를 받았더라도, 연도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합의서에 단서조항을 명시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공자가 그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며, 설령 당해계약기간내에 공기단축지시가 포함되어 그 비용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공기단축에 따른 추가비용을 산출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26)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1999.9.9) 제32조

이와 관련해서는 시공자가 1999년부터 2001 현재까지 꾸준하게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다.

(9) 시공상세도관련 클레임

현행법규상에서는 시공상세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보상해야 하는 사항인지 아닌지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실시설계도면 완료 이후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도면에서 구체적으로 목적물을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여 발주자가 보다 더 상세하게 그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세설계도면의 작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추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발주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시공자가 작성해야 할 시공상세도란 상세설계도면의 구현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할 뿐이므로 상세설계도면만 완벽하다면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비용이 들 이유가 없다. 현재 걸으로 드러나는 쟁점은 시공상세도를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상세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공자가 1998년 일괄입찰공사를 수행하던 중 건설기술관리법령의 변경으로 시공상세도의 작성업무가 추가되었음을 주장하며 발주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며, 금액은 5개공구 23억원이었다.

3.3 문제점요인 분석

이상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발생되고 있는 설계서관련 각종 클레임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클레임은 국가차원의 기준관리 미흡,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처리미흡, 상세설계도면의 개념 불분명, 설계자 업무별 대가기준 미흡, 다양한 계약체계의 부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었다. 다음은 이들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반복공사의 표준도관리 미흡

건설기술관리법²⁷⁾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과 관련된 기준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수립이나 집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면 및 기준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발주기관별로 사업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경우나 전국적으로 사업이 반복적으로 발주되는 경우에 표준도를 관리하면 기획단계, 기본설계단계, 실시설계단계 등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될 수 있지만 시설물 혹은 공종별

표준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리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공상세도면, 실시설계도면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2) 일괄입찰공사에서 지장물책임전가

지하부분은 설계를 진행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투명한 요소가 많다. 따라서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순으로 설계가 진행될수록 불투명한 요소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근본적으로 지하구조물, 지장물, 지하현장여건 등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많다. 예를 들어 실시설계도면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지하부분은 미확정된 상태로 남게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시설계도면에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작업방법 등)까지 명시하게 되면 토목공사의 특성상 거의 설계변경사항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된다. 즉, 지하공사의 경우 예측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도면을 관리하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

(3) 도면해석에 대한 책임불분명

실제 현업에서 시공상세도면과 설계상세도면과 관련하여 쌍방에 책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귀속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설계상세도면을 검토한 후 시공자가 시공하기 위하여 도면으로 작성한 것은 시공상세도이다. 즉, 잘못이 있는 설계상세도면을 검토할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도면검토에 대한 책임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설계자가 설계상세도면에 작성상 잘못이 없었다라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시공자와 감리자와의 사이에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4) 설계자 업무별 대가기준 미흡

설계계약에 있어서는 조사업무가 업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²⁸⁾에서 계약상대자(설계자)의 업무를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시행지침(대가기급기준)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세부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못하다. 이 때문에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업무 혹은 특별업무를 지시하면서도 어디에 속하는 업무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설계자의 업무가 명확하게 계약문서로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에 업무로 인한 의견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서도 계약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27)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설계 및 시공기준) ① 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철도청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설계기준
2. 건설공사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등
3. 기타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현행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4.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기술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외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을 말한다.

수도 있다.

(5) 다양한 계약체계의 부재

발주자별 시설물별로 위험(Risk)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발주자는 이러한 위험을 어떠한 형태로 계약당사자에게 전가할 것인가가 거의 확실적인 입찰절차, 입찰문서, 계약절차, 계약문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업에서는 현장의 특성이나 발주자의 가용자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4. 입찰 및 계약제도의 개선방안

상기에서는 설계서, 설계변경, 설계서 관련 실정클레임 및 클레임의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설계서 관련클레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1 반복공사의 표준도 축적 및 재활용

도면은 시설물을 형태, 가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발주자가 표준화시켜 준비하고 있는 도면이 있다면 그만큼 시설물 그 자체에 대한 예정가격이나 거래실례가격을 산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설계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표준도면을 어떻게 현장에 구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사항을 조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현장조사 등의 업무가 철저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의 제반 문제점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설계자는 조사업무를 철저히 함으로써 표준적인 도면의 변경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설계에 다시 반영함으로써 시공시 발생하는 조사사항의 부실(지장물조사 등)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변경업무를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시공자의 경우에도 설계자가 제시한 도면을 토대로 더 나은 공법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시공자의 선정과정은 자연스럽게 기술경쟁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발주자의 경우에도 표준도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시스템)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도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발주자도 자신의 업무에 대해 책임이 명확해지게 되며, 설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2 발주자별 특화된 시방서 활용

현재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의 형태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다. 경쟁사항은 시방서의 형식과 틀이 아니라 그 내용이며, 지금까지는 발주자 자체공사를 통하여 축적된

지식이 시방서의 형태로 구현되거나 보존관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자가 설계도서 작성시 만든 시방서를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따라서 고도의 전문가가 현장경험,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방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도면이란 시방서와 별개로 분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도면과 시방서는 산출내역서와 연계하여 변경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을 국가차원에서 인지하고 국내외 시방서 작성전문가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발주자별로 현장의 특성에 맞춰 시방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훈련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4.3 설계자 전문가책임보험제도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일괄입찰공사에서는 설계자가 지장물에 대한 무한대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나, 이는 계약원칙상 과다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계자의 한계를 초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책임보험으로 부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4.4 도면 개념을 구체화

실시설계도면과 기본설계도면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기본설계도면이든 실시설계도면이든 중요한 것은 도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도면이란 원하는 목적물의 형태, 모양을 구체화시키고, 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실시설계도면과 기본설계도면의 차이점은 도면의 상세 정도이고, 시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한 도면이라 함은 오히려 시공상세도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기본설계도면에 대한 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고 동시에 계약시에는 토목과 건축의 특성을 살리고, 한편으로는 사업별 특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4.5 설계업무 대가기준의 정립

발주자는 자신이 지시하는 업무에 대하여 상세한 기준을 만들어 기본업무,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에 대한 유형, 업무량 및 대가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시설물을 완성하기 위해 설계도면과 관련하여 필요한 설계도면종류와 투입되는 업무의 상세정도가 정해져야 한다.

4.6 다양한 계약체계를 확립

시설물별로 위험(Risk)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발주자는 이러한 위험을 어떠한 형태로 계약당사자에게 전가할 것인가를 입찰절차, 입찰문서, 계약절차, 계약문서 등을 통해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입찰 및 계약관련 각종 절

표 1. 클레임종류-클레임요인-개선방향 비교표

클레임 종류	문제점요인분석	개선방향
1. 완성부품질 관점상으로 인한 클레임	반복공사의 표준도관리 미흡(2, 4, 5, 7번 클레임 발생)	반복공사의 표준도 축적 및 재활용 및 발주자별 특화된 시방서 활용
2. 구체적 표현없는 공법으로 인한 클레임		
3. 기본계획변경에 의한 설계변경클레임		
4. 산출내역서 누락공종의 설계변경클레임	일괄입찰공사에서 지장물책임전가(5, 7번 클레임 발생)	설계자 전문가책임보험제도의 도입
5. 공법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클레임		
6.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클레임	도면해석에 대한 책임불분명(2, 5, 7번 클레임 발생)	도면 개념을 구체화
7. 감리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클레임	설계자 업무별 대가기준 미흡(3번 클레임 발생)	설계업무 대가기준의 정립
8. 공기단축이나 공기연장에 따른 클레임		
9. 시공상세도관련 클레임	다양한 발주체제의 부재(5, 7, 8번 클레임 발생)	다양한 계약체계를 확립

차 등을 구분하여, 법령에 준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일된 기준은 국가 공통으로 정하되 계약과 관련된 시행세칙은 각 사업별로 발주자가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이러한 경우 발주자의 예산집행을 감시할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며, 이 역할을 발주자 감사(계약이후의 집행, 사항에 대한 집중감시) 혹은 중앙부처 감사(계약이전의 집행사항에 대한 집중감시 등)에서 업무를 나누어 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클레임 사례, 문제점 요인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도표로 요약하면 상기 표 1과 같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 필수적인 설계서인 도면과 시방서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고, 현재 실제 현장에서 설계서와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클레임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과 제도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도상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복공사의 경우 표준도를 축적하고 재활용하며, 발주자별로 특화된 시방서를 활용함으로써 국가차원의 기준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하부문공사의 도면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하공사와 관련해서는 계약방법을 달리함으로써 확실한 지하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계자의 한계를 초과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전문가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설공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도면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설계자의 기본업무,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에 대한 유형, 업무량 및 대가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설계자의 업무와 관련된 클레임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발주자별·사업유형별로 다양한 계약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발주방식으로 파생되는 설계서관련 클레

임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설계서의 작성주체는 명백하지만 계약당사자의 책임, 업무성격 등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된 책임관계의 해결방법은 미묘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계약제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약당사자간의 역할, 책임, 권한 등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계약문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하고, 이러한 계약문서에 따라 체계적인 계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건설기술관리법령, 1999.
2. 건축사법, 1997.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1999.
4. 기술사법, 1997.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997.
6. 재정경제부 유권해석(회계41301-740, '97.3.27).
7. 대법원판례(1994.3.25. 제3부 판결 93다42887 공사대금).
8. 대법원판례(1998.10.2. 98다33888 판결 공사대금).
9. Hunt and Nichols, Inc. v. Moore, 136(Cal. 1977).
10. Paxton v. County of Alameda(Cal. 1953).
11. 『우리나라 공사계약일반조건』, 1999.
12. 『우리나라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1999.
13. 국제엔지니어연합회(FIDIC),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조건』, 1995.
14. 미국건축사협회(AIA),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조건 A191』, 1985.
15. 미국종합건설협회(AGC), 『설계시공일괄입찰계약조건 AGC 410』, 1982.
16. 동아출판사, 『동아 원색세계 대백과사전』.
17. 박준기, 『건설책임론』, 기공사, 1997.

18. 서울특별시, 「월간기술정보」, 1998.2.
19. 장훈기, 「정부계약제도」, 범신사, 1996.
19. 장훈기, 「정부계약제도해설」, 범신사, 1997.
20. 조영준, 「설계에 기인한 위험으로부터 계약당사자 보호를 위한 전문가책임보험 도입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2권, 10호, 1996.
21. AIA, Scope of Designated Services, AIA Document B 162, 1977.
22. David L. Cornes, 「Design Liability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1994.
23. GSA, 「Standard Form 253」, Architect- Engineer Contract, 1975.
24. Irv Richter, 「Handbook of Construction Law and Claims」, Reston Publishing Company, 1982.
25. Robert F. Cushman, 「Differing site condition claims」, JOHN WILEY & SONS, INC, 1992.

Abstract

Recently many construction claims related to the omission and discrepancy of design document are alleged since 1998 and various dispute resolution methods are appeared. But many contractors alleged claims are not satisfied with the result because of not sufficiently reflecting construction pract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ability of contract privity from the view point of the contract related law and to analyze the claims and claim factor, and to suggest construction contract practice in the public project.

The construction claims related to the design document may be minimized, through

- (1) the accumulation and retrieval of standard forms by owners' type,
- (2) the usage of specified specification considering project characteristics,
- (3) the materialization of detail subsurface design and various contract method in heavy engineering construction,